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830
----------	-------

제안연월일 : 2026. 5. .

제안자 : 외교통일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상정일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060	이기현의원 등 10인	2025. 3. 18.	2025. 9. 16.
	16344	김성원의원 등 10인	2026. 1. 27.	2026. 3. 6.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11.)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2026. 3. 17.)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재외동포의 거주 국가·세대 등에 따라 정책 정보 접근성이 상이하고 언어 장벽 등으로 정책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의 안내·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법 목적조항에 한반도 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추가하여 명시함(안 제1조).

나.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를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인류 공동번영의”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온라인·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 재외동포청장은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u>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lt;신 설&gt;</u></p>	<p>제1조(목적) ----- ----- ----- ----- <u>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인류 공동번영의</u>----- -----.</p> <p><u>제13조의2(온라인·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 재외동포청장은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